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02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기술표준원장

##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KS안을 개발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기관”이라 함은 전문 분야별 또는 품목별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KS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학회·조합,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및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KS안을 개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KS개발위원회”라 함은 KS안의 작성·검증·합의 도출 등을 위하여 개발기관에서 전문분야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 “KS개발책임자”라 함은 KS안 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개발책임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장 지정 요건

제3조(신청 자격) 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문 분야별 협회, 학회, 조합,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개발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및 단체

제4조(지정 요건) ① 개발기관이 갖추어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KS안 개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 등의 실적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의 국가표준 제정에 참여한 실적 등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을 것
4. 제6조의 개발책임자 등 업무 수행에 적정한 표준 전문인력 및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KS안 개발 업무를 수행시 다른 업무로 인하여 KS안 개발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KS안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개발책임자등 전문가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KS안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9. 반대 의견 등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발위원회)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제6조(개발책임자) 제4조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회의 위원
2.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 하는 자

### 제3장 지정 절차

제7조(지정 신청) ① 개발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일반 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주요업무 등)
2. 인력 및 설비 현황(개발책임자, 개발위원회 위원 명단 등)
3. 관련 국내·외 규격 현황
4. KS 제정 등의 신청 실적
5. KS안 개발에 관한 업무 규정

② 개발기관은 지정받은 분야 및 품목 외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신청 분야 또는 품목 담당 직원과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제7조 제2항의 추가 신청 평가절차는 최초 신청시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지정위원회) ① 기술표준원장은 개발기관의 지정·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기관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기관의 지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개발기관간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규격개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생산업체에서 기술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4. 소비자단체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기술표준원 해당 분야 또는 품목 담당부서의 각 팀장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촉한 위원은 그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⑤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 총괄부서의 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⑥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결과 심의) ① 지정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의 적합성과 함께 심의 상정된

신청기관이 개발기관으로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2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 서명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및 공고) ① 기술표준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고 신청기관이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기관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의 소재지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개발기관 운영

제12조(개발기관의 역할) 개발기관은 지정받은 전문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KS안 개발 계획의 수립
2. KS안 개발 및 해설서 작성
3. KS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4. 기타 KS안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변동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개발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대표자, 양도 등에 의한 개발기관의 지위의 변경

2. 개발기관의 소재지 변경

3.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의 변경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기관의 준수사항) ① 개발기관은 제4조의 지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관은 KS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KS안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발기관은 국가표준화기관을 사칭하는 등 개발기관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정 취소 등) 기술표준원장은 개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어 정상적인 KS안 개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법 제5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등을 신청하여 제정 등이 된 실적이 최근 5년에 3회 미만일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5.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6. 기술표준정책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7. 기타 동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제16조(개발기관 지원) 기술표준원장은 KS안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KS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2.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사업에 가점 부여
3. KS안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출장비 등 경비의 지원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KS규격의 판매 단가에 개발 원가를 반영하여 판매가를 책정하고, 그 판매 금액의 일부를 계약에 의거 개발기관에 지원
5. 기타 표준 전문가, 표준 관련 교육 등 KS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17조(제정 등의 신청) ① 개발기관은 KS안 개발을 완료한 경우 법 제5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 제정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산업표준 심의회의 해당 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규격 제정 등의 신청에 따른 일반절차는 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준**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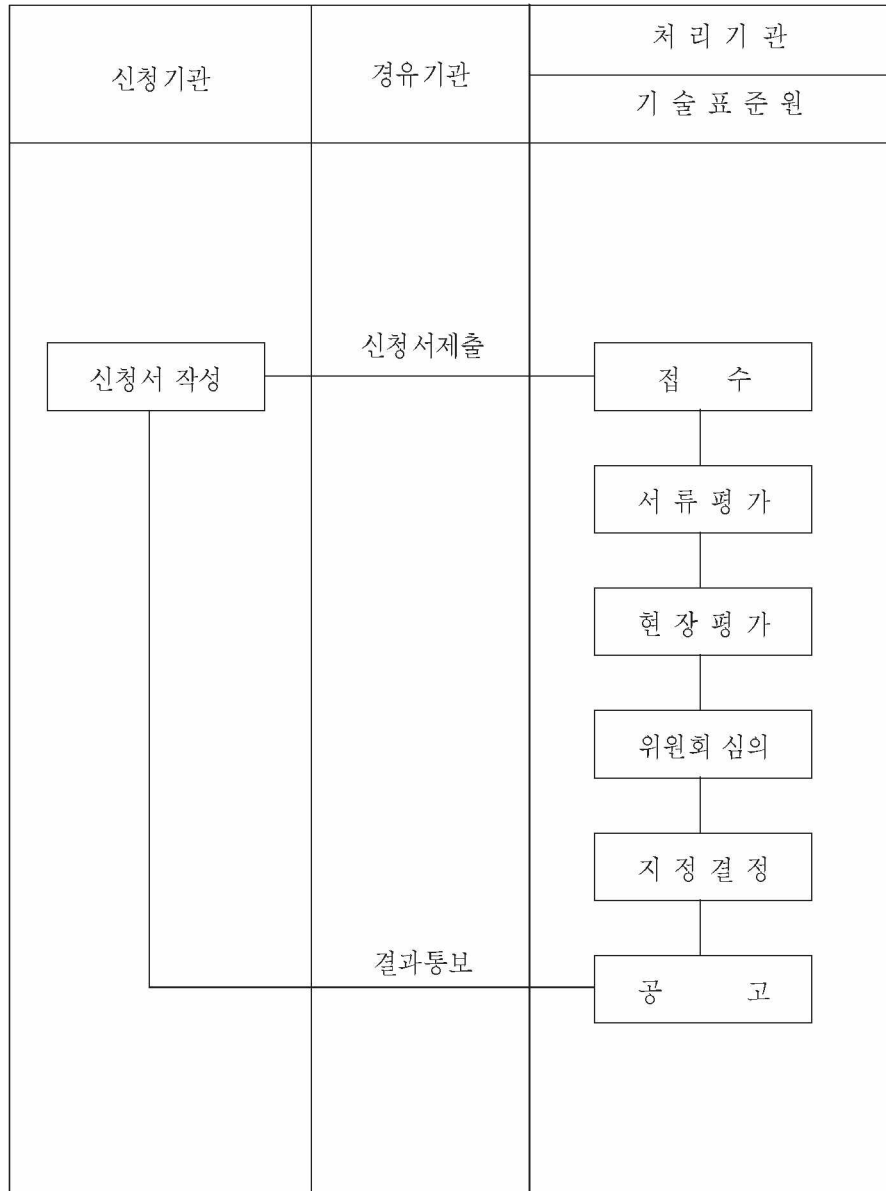
(앞면)

<b>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신청서</b> ( □ 신규, □ 추가 )		처리기간 : 90일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기관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⑤ 신청 분야 또는 품목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청기관 일반 현황 2. 인력 및 설비 현황 3. 관련 국내·외 규격 현황 4. KS 제정 등의 신청 실적 5. KS안 개발에 관한 업무 규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 심의결과통보서

위원회명 :

심의안건 :

심의결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조건/사유 :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유효기간 :

지정 분야 또는 품목 :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으로 위와 같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 - 111 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정 2005. 12. 12.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5 - 106 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를 기술표준원장 및 전파연구소장이 공동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신제품 인증의 대상) ①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전파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신제품 인증의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

청인”이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신제품인 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 중 선행기술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 받은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선행기술의 조사를 할 수 없는 신청제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특허정보원

2. (주)엡스

3.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원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심사·현장심사·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결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이하 “세부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기술표준원장이 전파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제품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청제품 또는 제11조제3항의 연장신청제품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신제품 인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면제의 경우에는 1월 이내로 한다)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서류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현장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와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품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술표준원
  2. 전파연구소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
  4.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6. 「전파법」제46조제4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분석·평

가한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종합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라 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10조(신제품 인증심사의 면제)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제품이 영 제18조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에서 품질보증시스템 점검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정부가 발굴·지원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제품인 경우
2. 「발명진흥법」제27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인 경우
3. 산업자원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
4.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신속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③ 신청제품이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6조의 서류심사에서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및 기술적 수준 등의 신기술성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증심사 면제의 범위를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공장을 포함한다)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에서 품질 보증시스템 점검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 3월 전까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제외한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결과 인증된 신제품(이하 “연장신청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연장신청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2. 연장신청제품을 신제품 인증 당시의 수준으로 제조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신제품 인증서의 교부 등)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3조의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이하 “인증 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재교부



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 한다.

제13조(신제품 인증의 공고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신제품(이하 “인증 신제품”이라 한다)의 공고는 영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르되,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기술표준원 또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제품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 신제품 검색,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① 신제품 인증표시(이하 “NEP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영 제2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NEP마크를 표시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인증신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본다.

- ⑤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⑥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⑦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신제품 인증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실적 제출 등) ① 인증 받은 자는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분석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지원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신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료 및 인증신제품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8조의 제품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인 경우
2.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5.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6. 기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를 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에서 제조·보관하는 인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한다.

제19조(개선권고)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2.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 또는 성능 및 품질 등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 등을 포함)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취소) ①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 성능 및 품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부도 등으로 인증신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신제품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소요비용 부담)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

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업무대행)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분석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신제품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제품 인증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세칙)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제품 인증의 접수, 인증심사 및 인증심사 면제 등의 세부절차, 세부판단기준,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EM) 및 우수환경성비인증(BEC)과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은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본다.

②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신기술(NT)인증, 신기술(KT)인정 중 제품에 대한 인증은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본다.

부 칙(2006.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표준**

[별표 1]

신제품 인증서 재교부시의 구비서류(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대표자·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	•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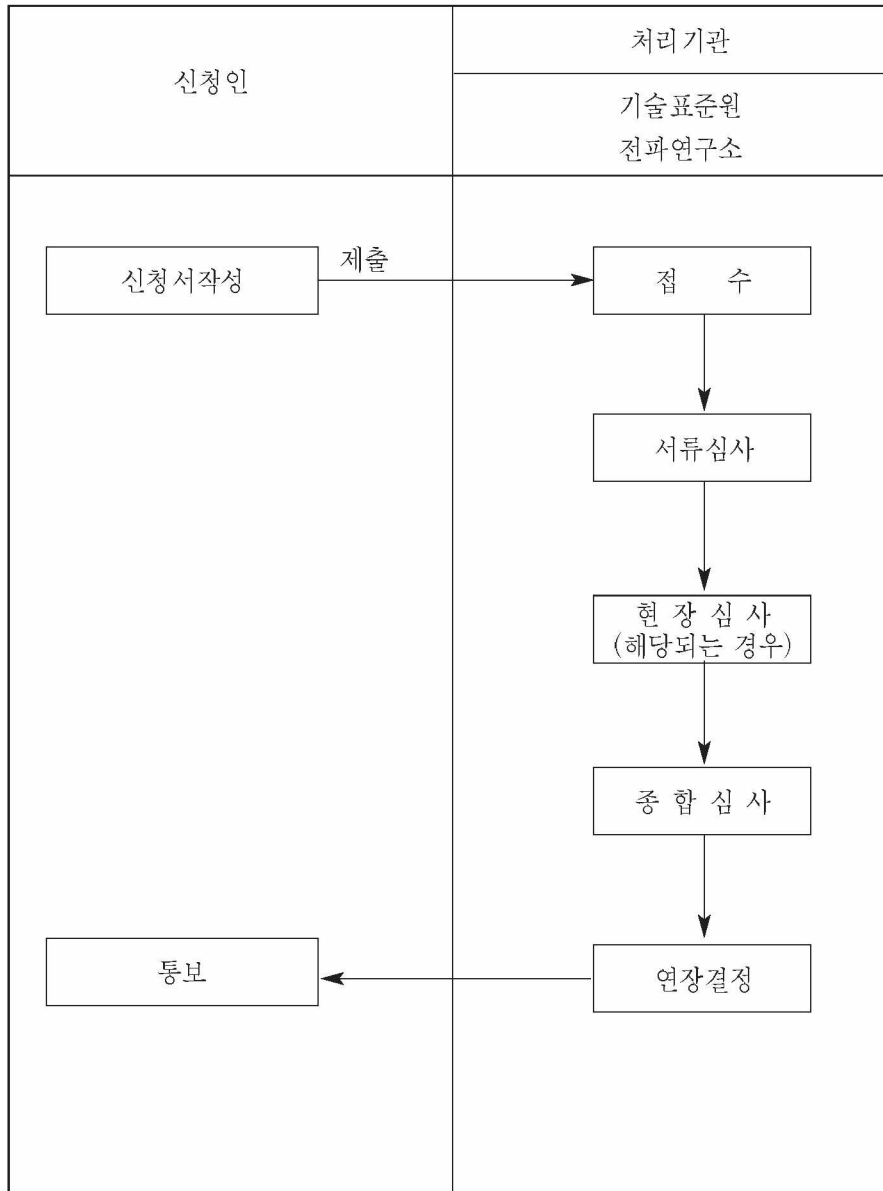
(앞 쪽)

<b>신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b>		처리기간	
		90일이내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인증유효 기간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행정 담당자	소속부서	전화
		직위 및 성명	전송
기간연장	* 연장신청제품 관련 현재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 · 경쟁제품의 현수준 등 연장내용에 대하여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 11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b>기술표준원장(전 파연구소장) 귀하</b>			
별첨자료	1. 연장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세부설명자료 또는 증빙서류 2.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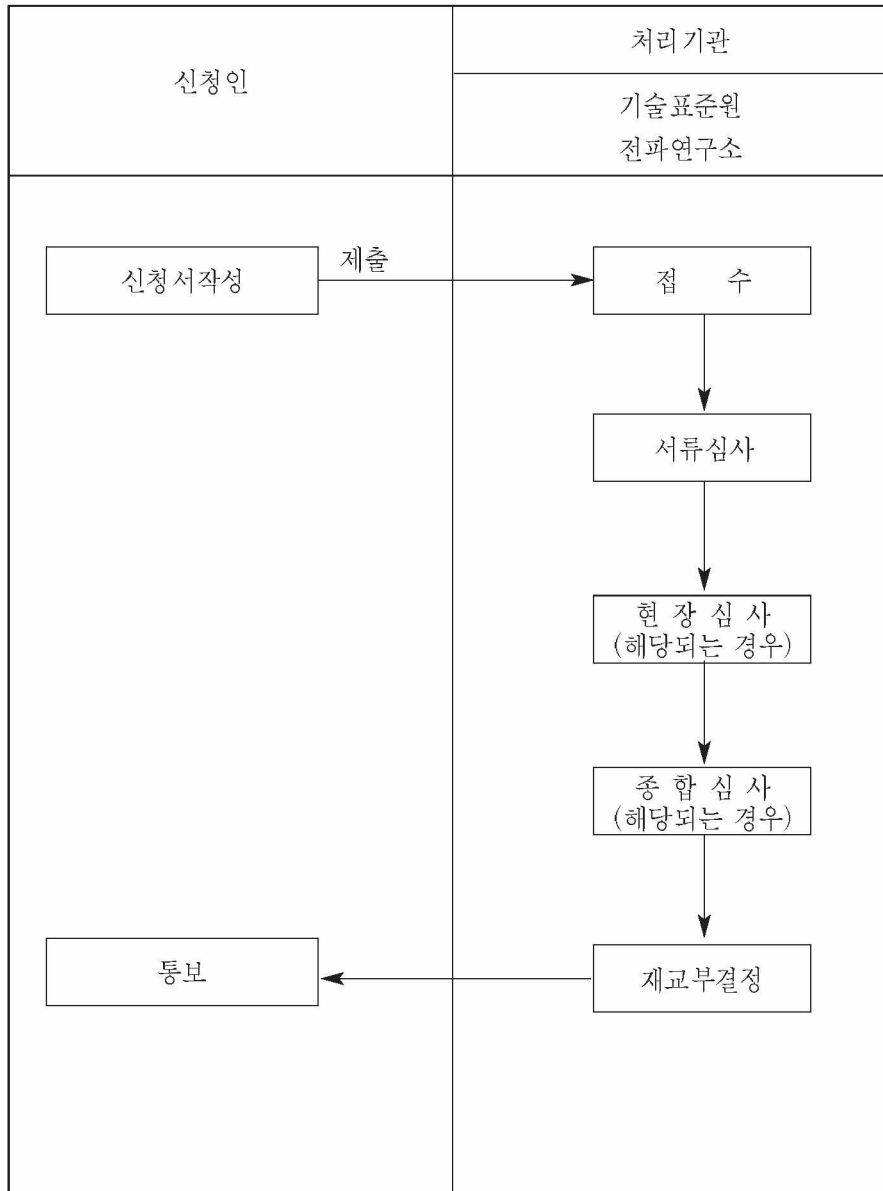
(앞 쪽)

신제품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이내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인증유효기간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신청사유			
<p>「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기술표준원장(전 파연구소장) 귀하</p>			
구비서류	제12조제4항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종))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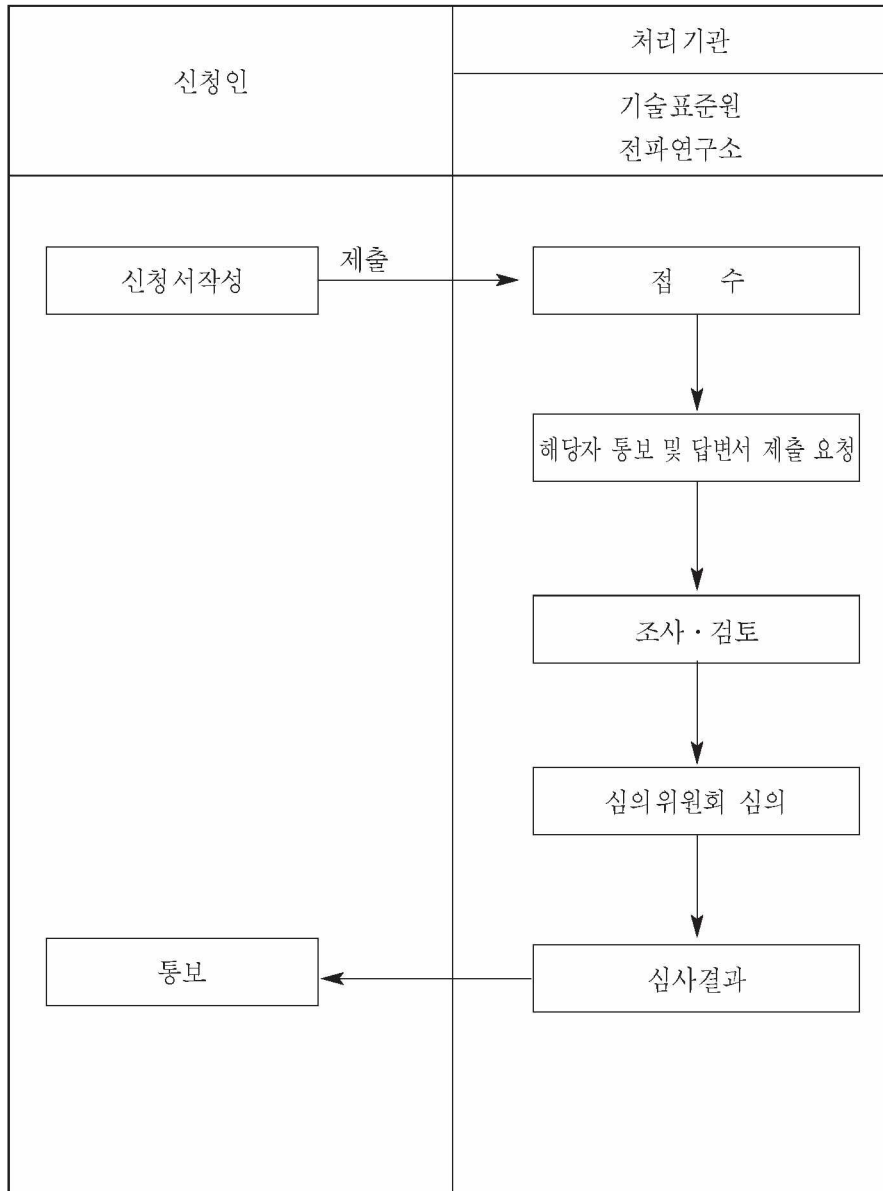
(앞 쪽)

<b>이 의 신 청 서</b>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회사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주 소	□□□-□□□□
이의신청 인증신제품명		인증업체명	
신청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이 의 신 청 답 변 서		
이의신청 인증신제품 개 요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인증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이의신청 사 유 (요 약)		
답 변 내 용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 실 적 보 고 서

업 체 현 황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전화		팩스		e-mail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주요 수출국	
	총매출액 (실적/계획)	/ (백만원)	내수 (백만원)	/	수출 (만불)	/
	주소	000-000				
인증 제품 현황	인증신제품명		인증번호		전년도 매출액(실적/계획)	
					총매출 (백만원)	내수 (백만원)
					수출 (만불)	수출 (만불)
	①					
	②					
인증 지원 실적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전 (백만원)	구매처			
	자금지원	전 (백만원)	자금 종류	<input type="checkbox"/> 구조개선자금 <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input type="checkbox"/> 산업기반자금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개발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정책자금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자금		
	우대보증 지원	전	보증 종류	보증 조건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보증 기관
	조달우수 제품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input type="checkbox"/> 신청중				
	전시회 지원	실적	○전시회명 :		○전시부스 : 부스	
		계획	○전시회명 :		○전시부스 : 부스	
건의사항 등						
「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계량용품))

[별지 제6호 서식]

## 신제품 인증(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 1. 개선권고 대상자

- 회사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인증번호 : 제 - 호

### 2. 개선권고 대상 인증신제품

- 인증신제품명 :
- 인증범위 :

### 3. 개선권고 내용 및 사유

- 개선기간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권고 사유 :

### 4. 개선결과 제출

- 개선기간이내에 개선하고 개선결과를 개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전화 02-509-7289) 또는 전파연구소(우 140-848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전화 02-428-2319)에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신제품 인증취소 예정서

### 1. 인증 취소 대상자

- 회사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인증번호 : 제      -      호

### 2. 인증 취소 대상 인증신제품

- 인증신제품명 :
- 인증범위 :

### 3. 인증 취소 사유

### 4. 의견 제출처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Tel : 02-509-7289, 담당자 :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Tel : 02-428-2319, 담당자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 신제품 인증(NEP)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

### 1. 인증 취소 대상자

- 회사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인증번호 : 제       호

### 2. 인증 취소 대상 인증신제품

- 인증신제품명 :
- 인증범위 :

### 3. 인증 취소 사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 - 252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3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기술표준원장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 1. 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3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품, 침구류), 양탄자, 스포츠용 구명복, 등산용로프, 건전지(충전지 포함), 부동액,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차용티어, 안전확인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연결열화비닐호스,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자동차용 안전유리, 빙삭기, 자동차용휴대용 잭,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침대매트리스, 자동차용정지표시판,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반사안전조끼,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칼훈, 노트포함), 휴대용사다리, 벽지·종이장판지, 완구(작동완구, 비작동완구, 고무풍선 포함), 휴대용레이저용품, 수경, 스케이트보드, 쇼핑카트,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 높은의자, 유아용삼륜차, 보온·보냉용기, 스노우보드 스키용구, 헬스기구, 이륜차 전거, 유아용캐리어, 고령자용보행차,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보행보조차, 일회용기저귀, 바퀴운동화, 디지털도어록, 어린이용귀금속악세서리 등 47품목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스포츠용구명복, 등산용로프, 건전지(충전지포함),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앞면창 유리세정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용정지표시판,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반사안전조끼, 미끄럼방지타일, 휴대용사다리, 휴대용 레이저용품, 쇼핑카트, 유아용의자,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바퀴운동화 등 18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되,
  - 건전지(충전지포함)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포함시키고, 납 함량 안전요건을 추가함
  - 자동차용안전유리는 KS L 2008과 ECE R43의 기준을 반영하여 복층유리를 검사 대상에 포함 함
  - 휴대용사다리의 '제2부 도배용사다리'에 '발판길이 조절용 도배용사다리'를 적용범위에 추가함
  - 유아용의자는 제품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적용범위에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높이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헬스기구 중 '제4부 러닝머신'은 '제어스위치의 내구성 시험' 및 '전기적 안전성시험방법'을 추가하고 표시사항에 '정확도 등급'과 '정격모터마력'을 표기하도록 함. 또한, '제8부'에 운동용슬라이더'를 추가함
  - 바퀴운동화의 주행시험에서 주행속도를 실제 사용하는 평균속도로 수정함(주행속도 : 10km/h → 5km/h)
-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제품, 침구류), 양탄자, 자동차용타이어,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 잭, 물탱크, 벽지·종이장판지, 침대매트리스, 수경, 스케이트보드, 유아용삼륜차, 스키용구,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정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되,
  -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제품, 침구류) 및 양탄자는 유럽의 에코텍스 규정을 준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기준치를 설정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법은 KS K 0611 등 KS규격을 채택하였음
  - 침대매트리스는 스폰지고무, 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를 적용범위에

추가함

- 자동차용타이어, 롤러스케이트, 침대 매트리스, 아동용이단침대는 KS규격과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으로 적용
- 현재 일부는 안전검사, 일부는 안전검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찰흙, 노트포함), 안전확인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완구(작동완구, 비작동완구, 고무풍선 포함), 보온·보냉용기 등 4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사 또는 안전검정 기준을 적용하되,
  - 탈취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학용품의 검사범위에 문구용찰흙과 문구용품을 포함함
  - 특히, 완구는 유럽기준을 반영하여 가정용놀이기구를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
-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귀금속약세서리, 디지털도어록,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스노우보드 등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추가(7품목)되거나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호스, 일회용기저귀 등 품질표시대상에서 변경된 품목(3품목)에 대해서는 KS 규격 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안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함
  - 유아용캐리어,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등 4종은 어린이 및 고령자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되 국내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조정함
  - 스노우보드, 디지털도어록 등 2품목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함
  - 어린이용귀금속 약세서리는 미국 CPSC규정(2/3/2005)을 준용하여 납, 니켈의 기준치를 설정함

3.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제정(안) 내용

\* 아래의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252호 (2006. 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한 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1 내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7을 적용한다. 다만,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산품별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1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제품, 침구류)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2 양탄자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3 스포츠용 구명복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4 등산용로프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5 건전지(충전지 포함)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6 부동액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7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8 자동차용타이어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9 안전확인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0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1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2 연질염화비닐호스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3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4 자동차용안전유리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5 빙삭기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6 자동차용휴대용 책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7 물탱크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8 미끄럼방지타일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9 침대 매트리스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0 자동차용정지표시판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1 롤러스포츠훈련장구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2 반사안전조끼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3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찰흙, 노트포함)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4 휴대용사다리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5 벽지·종이장판지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6 완구(작동완구, 비작동완구, 고무풍선 포함)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7 휴대용레이저용품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8 수경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9 스케이트보드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0 쇼핑카트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1 롤러스케이트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2 아동용이단침대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3 유아용의자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4 유아용삼륜차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5 보온·보냉용기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 스노우보드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7 스키용구
-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8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9 이륜자전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0 유아용캐리어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1 고령자용보행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2 고령자용지팡이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3 고령자용보행보조차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4 일회용기저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5 바퀴운동화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6 디지털도어록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7 어린이용귀금속악세서리

부 칙 (제2006-252호, 2006. 12.24)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 4.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246~9    ○ 전송번호 : 02-509-7302

